|  |  |  |
| --- | --- | --- |
|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감독**  **관리방법 (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공고 2012년 제31호  시장구매의 대외무역 질서 규범화 및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본 국은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 감독관리방법(시범시행) 》을 제정하여 이에 발표한다. 2012년 4월 1월부터 북경(北京), 절강(浙江), 광동(广东), 신강(新疆) 4개의 성(시,구)에서 시범시행 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서류: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감독 관리방법(시범시행) 》  2012년 3월 2일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감독 관리방법**  **(시범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시장구매 상품의 수출행위를 규범화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 등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시장에서 구매한 수출상품검사 감독 관리에 적용한다.  본 방법은 시장구매 수출상품이라 칭한다. 이는 수출상품 선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내시장에서 현물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 지역의 검사검역기구가 검사한 법정 검사 수출상품을 가리킨다.  **제3조** 국가질검총국은 시장구매 방식으로 수출한 제품을 금지하고,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가질검총국 웹사이트에 발표되어 있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직속출입국검사검역국(이하 직속검사검역국이라 함)은 관할 구역의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 및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직속검사검역국은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공급단위와 선적인 대리인(이하 비안단위라 함)의 비안(备案)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구역의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검사과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검사검역기구는 비안단위의 비안 신청처리, 승인, 비준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공급단위, 선적인의 대리인은 자발적 원칙에 따라 검사검역기구에 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급단위는 독립법인의 자격을 갖추고 시장구매 수출상품 공급업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생산기업 수권을 획득하여 시장구매 수출상품 공급업에 종사하는 대리단위이다.  선적인의 대리인은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구매, 저장 및 운수, 국제화물운송 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를 포함한다.  **제2장 비안 관리**  **제6조** 비안을 신청한 시장구매 수출상품 공급단위와 선적인 대리인(이하 비안 신청인이라 함)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합법적인 경영 자질을 갖추어야 함  (2) 고정된 경영, 창고, 검사 등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시장구매 수출상품 질량검사 검수제도를 구축 및 집행하고, 입출고 대장, 구입 및 판매 대장을 건립해야 함  (4)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비안 신청인은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안 신청서  (2) 공상영업집조 사본, 검증된 원본 교부  (3) 비안을 신청한 단위의 기본 현황, 경영장소, 창고장소, 검사장소 등을 포함한 유관 현황에 대한 설명서  (4) 비안을 신청한 단위의 기본 관리제도  (5) 국가질검총국이 요구한 기타 자료  **제8조** 검사검역기구는 비안 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부합 조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비안 신청인에게 비안 증명서를 발행한다. 비안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내, 비안단위의 경영장소 또는 기타 주요 조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비안을 승인한 검사검역기구에 신속히 고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처리하고 비안을 재신청 해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비안단위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비안을 승인한 검사검역기구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3장 검역 신고**  **제9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선적인 및 그 대리인은 상품 구매지역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역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0조** 선적인은 시장구매한 수출상품에 대해 검수를 진행한 후 국가질검총국《출입국 검사검역의 검역 신고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검역 신고 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부합성 성명서. 선적인은 그 검사 신고한 수출상품이 수입국가(지역)의 기술 법규와 표준 요구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성명을 한다. 수입국가(지역)의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선적인은 그 검역 검수한 수출제품이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및 유관표준 또는 계약 약정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성명을 한다.  (2) 수출상품 품질 합격 검수 보고서  (3) 상품구매 영수증 등 시장구매 증빙서류  (4) 비안단위의 상품 구매 시, 비안 증명서 사본 제출  **제4장 검 사**  **제11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은 구매지역의 검사 및 항구 검사의 검사 감독방식을 시행한다.  **제12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은 수입국가(지역)의 기술법규, 표준 요구에 따라 검사을 실시한다. 수입국가(지역)가 기술법규, 표준 요구가 없을 경우, 중국 국가기술 규범의 강제성 요구 및 유관 표준 검사에 따른다. 중국에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및 유관 표준이 없을 경우, 계약 약정의 요구에 따라 검사을 실시한다.  계약에서 약정한 요구가 수입국가(지역)의 기술법규, 표준요구 또는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및 관련 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13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공업제품기업 분류 관리 방법》(국가질검총국 제113호령)을 참조하여 시장구매 수출상품 공급단위와 선적인 대리인에 대해 분류별 관리를 실시하고, 특별감독, 엄밀감독, 일반감독, 검증감독, 신용감독의 서로 다른 5종류의 검사 감독방식을 확정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비안을 받지 않은 시장구매 수출상품에 대해 검사 승인을 실시하고, 특별감독 또는 엄밀감독의 검사 감독방식에 따라 수출감독을 실시한다.  **제14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이 검사을 거쳐 합격일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유관 검사검역 서류에 서명 후 발송하고, 서류 상에 “시장구매”를 분명하게 명시한다.  **제15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이 검사을 거쳐 불합격, 서명 후 발송한 서류가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한다. 재 검사을 거쳐 합격해야지만 수출을 허가한다. 기술처리 또는 기술처리를 거친 후 재 검사에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 수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법정 검사 이외의 수출상품에 대해서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유관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17조** 구매지역의 검사검역기구는 검사에 합격한 수출상품에 대해 검사검역 봉식(封识)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증명서류 제출 할 때 봉식번호를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 항구 검사검역기구는 봉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수출상품에 대해 검사 수속을 간소화 할 수 있다.  항구검사검역기구는 검사하는 가운데 발견된 문제는 구매지역의 검사검역기구와 연락하여 법에 근거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검사검역기구는 비안단위에 대해 완벽한 기업 문건을 준비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유관 비안 신청, 심사, 승인 및 연장 재심사 관련 자료  (2) 비안단위에 대해 실시한 분류별 관리 및 일상감독 관리에 대한 기록  (3) 연간 품질 감독과 품질분석 보고  (4) 유관 기업의 신용기록, 유관 제품의 불만신고 기록  (5)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정보  **제19조** 검사검역기구는 비안단위에 대해 일상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비안단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견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상황의 경중을 파악해서 분류별 관리유형과 검사 감독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1) 검사검역의 법률, 행정법규, 규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품질 보증 능력에 폐해가 존재할 경우  (3) 검사 불합격 차수가 연속 발생할 경우  (4) 자체적 원인으로 상품의 품질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통보, 소환, 반품된 경우  (5) 일상감독 관리의 협조를 거부할 경우  (6) 입출고 대장, 구입 및 판매대장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  (7) 질량안전문제를 기만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  **제20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이 품질문제로 인해 국외통보 또는 소환되었을 경우, 구매지역의 검사검역기구는 사실을 조사하고 법에 근거하여 유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현지 정부 및 유관 부문에 통보를 할 수 있다.  **제21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을 검사 감독관리 하는 중 법률규정 규칙 위반이 발견될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한 자는 사법기관에 인계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시장구매한 견본품, 선물 및 기타 非무역성 물품, 대외원조 물자는 국가검사검역법률, 행정법규정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23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이 검역 요구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가 유관 검역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 **关于发布《市场采购出口商品**  **检验监督管理办法（试行）》的公告**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公告2012年第31号  为规范市场采购对外贸易秩序，提升市场采购出口商品质量，我局制定了《市场采购出口商品检验监督管理办法（试行）》，现予发布，自2012年4月1日起，在北京、浙江、广东、新疆4省（市、区）试行。  特此公告。    附件：《市场采购出口商品检验监督管理办法（试行）》  二〇一二年三月二日  **市场采购出口商品检验监督管理**  **办法（试行）**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市场采购出口商品检验监督管理工作，规范市场采购商品出口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等法律法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市场采购出口商品的检验监督管理。  本办法所称市场采购出口商品是指出口商品发货人或者其代理人在国内市场以现货方式采购，并由采购地检验检疫机构检验的法定检验出口商品。  **第三条** 国家质检总局禁止以市场采购方式出口的商品，不适用本办法，具体目录在国家质检总局网站上公布。  **第四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市场采购出口商品检验监督管理工作。  直属出入境检验检疫局（以下简称直属检验检疫局）负责所辖区域市场采购出口商品检验和监督管理工作。直属检验检疫局负责市场采购出口商品供货单位和发货人代理人（以下统称备案单位）备案的管理工作。  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检验检疫机构）负责所辖区域市场采购出口商品的检验和监督管理工作。检验检疫机构负责备案单位的备案申请受理、审核、批准工作。  **第五条** 市场采购出口商品的供货单位、发货人的代理人按照自愿原则可以向检验检疫机构申请备案。  供货单位是指具有独立法人资格、从事市场采购出口商品供货的单位，或者获得生产企业授权从事市场采购出口商品供货的代理单位。  发货人的代理人包括具有独立法人资格、从事市场采购出口商品采购、储运、国际货运代理等业务的单位。    **第二章 备案管理**  **第六条** 申请备案的市场采购出口商品供货单位和发货人代理人（以下称备案申请人）应当具备以下条件：  （一）具有合法经营资质；  （二）拥有固定的经营、仓储、检验等场所；  （三）建立并执行市场采购出口商品质量检查验收制度，建立出入库台账、购销台帐；  （四）国家质检总局规定的其他条件。  **第七条** 备案申请人应当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提出申请，并提供以下材料：  （一）备案申请书；  （二）工商营业执照复印件，并交验正本；  （三）申请备案单位基本情况，包括经营场所、仓储场所、检验场所等的相关情况说明；  （四）申请备案单位基本管理制度；  （五）国家质检总局要求的其他材料。  **第八条** 检验检疫机构对备案申请进行审核，经审核符合条件的，向备案申请人发放备案证明。备案证明有效期三年。  有效期内，备案单位的经营场所或者其他主要条件发生变更的，应当及时告知批准备案的检验检疫机构，并按照规定办理变更手续或者重新提出备案申请。  有效期满需要延续的，备案单位应当在有效期届满前三个月向批准备案的检验检疫机构提出延续申请。    **第三章 报 检**  **第九条** 市场采购出口商品发货人及其代理人应当向商品采购地检验检疫机构办理报检手续。  **第十条** 发货人应当对市场采购的出口商品进行验收后，按照国家质检总局《出入境检验检疫报检规定》向检验检疫机构报检，报检时还应当提供以下资料：  （一）符合性声明。发货人声明其报检的出口商品符合进口国家（地区）技术法规和标准要求，进口国家（地区）无明确规定的，发货人声明其报检的出口商品符合我国国家技术规范强制性要求及相关标准或者合同约定；  （二）出口商品质量合格验收报告；  （三）商品采购票据等市场采购凭证；  （四）采购备案单位的商品的，需提供备案证明复印件。    **第四章 检 验**  **第十一条** 市场采购出口商品实行采购地检验、口岸查验的检验监管方式。  **第十二条** 市场采购出口商品应当按照进口国家（地区）技术法规、标准要求实施检验；进口国家（地区）没有技术法规、标准要求的，按照我国国家技术规范强制性要求及相关标准检验；我国没有国家技术规范强制性要求及相关标准的，按照合同约定的要求检验。  合同约定的要求高于进口国家（地区）技术法规、标准要求或者我国国家技术规范强制性要求及相关标准的，按照合同约定实施检验。  **第十三条** 检验检疫机构参照《出口工业产品企业分类管理办法》（国家质检总局第113号令）对市场采购出口商品供货单位和发货人代理人实施分类管理，并确定特别监管、严密监管、一般监管、验证监管、信用监管五种不同检验监管方式。  检验检疫机构对来源于未经备案单位的市场采购出口商品实施批批检验，按照特别监管或者严密监管的检验监管方式实施出口监管。  **第十四条** 市场采购出口商品经检验合格的，检验检疫机构签发有关检验检疫单证，在单证中注明“市场采购”。  **第十五条** 市场采购出口商品经检验不合格的，签发不合格通知单，在检验检疫机构监督下进行技术处理，经重新检验合格后，方准出口；不能进行技术处理或者经技术处理后重新检验仍不合格的，不准出口。  **第十六条** 对法定检验以外的出口商品，检验检疫机构根据国家质检总局相关规定实施抽查检验。    **第五章 监督管理**  **第十七条** 采购地检验检疫机构可以对检验合格的出口商品加施检验检疫封识并在换证凭单中注明封识号码，口岸检验检疫机构对加施封识的出口商品可以简化查验手续。  口岸检验检疫机构在查验中发现的问题应当及时与采购地检验检疫机构沟通并依法处理。  **第十八条** 检验检疫机构应当对备案单位建立完整的企业档案，内容包括：  （一）有关备案申请、审查、批准及延续复审相关资料；  （二）对备案单位实施分类管理和日常监督管理的记录；  （三）年度质量监控和质量分析报告；  （四）有关企业信用记录、相关产品投诉记录；  （五）国家质检总局规定的其他信息。  **第十九条** 检验检疫机构对备案单位实施日常监督管理，发现备案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检验检疫机构应当视情节轻重及时调整分类管理类别和检验监管方式：  （一）违反检验检疫法律、行政法规、规章规定的；  （二）质量保证能力存在隐患的；  （三）检验连续出现不合格批次的；  （四）因自身原因造成商品质量或者安全问题被通报、召回、退货的；  （五）拒不配合日常监督管理的；  （六）出入库台账、购销台帐不能有效溯源的；  （七）隐瞒质量安全问题等不诚信行为的。  **第二十条** 市场采购出口商品因质量问题造成国外通报或者召回的，采购地检验检疫机构应当查清事实，依法追究相关责任。并可以根据需要，向当地政府及有关部门通报。  **第二十一条**　市场采购出口商品检验监督管理中发现违反法律法规规章的，依照相关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移交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 则**  **第二十二条** 市场采购样品、礼品以及其他非贸易性物品、援外物资，按照国家检验检疫法律、行政法规的相关规定执行。  **第二十三条** 市场采购出口商品涉及检疫要求的，按照国家相关检疫法律、行政法规执行。  **第二十四条** 本办法自2012年4月1日起施行。 |